

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· 운영 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『구미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』

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4. 6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교통약자들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며,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수탁자 : 구미시설공단
- 위탁사항
 - 특별교통수단 운행관련 전반
 -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련 전반

특별교통수단(장애인 콜택시)	이동지원센터(콜 센터)
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운행	이용자와 차량의 원활한 연계
정기·예약·즉시이용방식 가능	이용대상자 심사 및 이용신청처리
1일 24시간, 연중 무휴 운행	1일 24시간, 연중 무휴 운영
운전원의 승·하차 지원	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제공

- 차량대수

구 분	2014년	2015년	2016년
운행대수	6대	12대	17대

3. 운영 전출금

○ 연도별 전출금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	계	인건비	사무관리비	공공운영비	재료비	비 고
2014	135	96	12	15	12	
2015	540	355	25	60	100	
2016	765	511	29	81	144	
2017	765	511	29	81	144	

※ 운영비 : 대당 연45백만원 정도, 차량 구입비 : 대당 40백만원

4. 관련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-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9조

특별교통수단 도입 참고사진



관계법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 (관리위탁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
□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□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

제9조(특별교통수단 등의 위탁)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
2. 이동지원센터의 운영
3.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

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 다만, 시장이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